



발행번호 2-210-2014-206327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14. 12. 10.

수 신 참여연대

발 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형제12746호	
② 고 소 인 성 명	참여연대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 명	이동흡
	④주민등록번호	000000-0*****
⑤ 죄 명	가.업무상횡령	
⑥ 처 분 검 사	안권섭	
⑦ 처 분 년 월 일	2014. 12. 3.	
⑧ 처 분 요 지	가-혐의없음(증거불충분)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4. 12. 3.

사건번호 2013년 형제12746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안권섭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이동흡

II. 죄 명 업무상횡령

III. 주 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사실

피의자는 2006. 9. 15.경부터 2012. 9. 14.경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합계 3억 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수령하여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2. 불기소이유

○ 피의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 동안 헌법재판소로부터 특정업무경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500만원씩 총 3억 2천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월급 및 수당 지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발인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횡령죄에 있어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다, 경리직원으로부터 용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도 보험료, 자녀유학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나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 의사로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먼저, 내부 지침을 위반하여 특정업무경비가 집행되었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도 추단할 수 없고(대법원 2008도6755 판결),

- 구체적인 수령이나 보관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특정업무경비로 수령한 현금 또는 수표를 그대로 쓰거나 개인 계좌에 입금 뒤 사용하거나 이는 수령자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보관 장소나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며, 따라서, 세부 사용처에 대한 조사 없이 계좌에 입금된 사실 자체만을 문제 삼아 횡령죄 성립을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피의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장관급 공직자의 품위 유지를 위한 현금성 경비 지출에 따른 실비보전 차원의 금원으로 인식하고 일부는 바로 현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월급 등과 함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필요시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로 전문가 의견청취, 직원 회식, 격려금, 사무실 운영, 헌법재판제도의 외국 소개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용도제한이나 사후 증빙에 대해 고지받지 못해 당초 용도와 달리 전용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다만,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일일이 기억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 헌법재판관 재직 기간 동안 사용한 피의자 명의의 2개 계좌( ) 및 )의 수입이 14억여 원이고, 이 중 월급과 개인 수당 7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수표발행(1억 7천만원), 카드결제(1억 2천만원), 현금인출(3억 3천만원) 등의 형태로 지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위 두 계좌의 거래 내역, 2009. 1. ~ 2010. 12.까지 특정업무경비의 일부가 입금된 계좌( )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 46장 중 25장이 비서실 직원, 법조 관련자 등에게 지급되었음을 보여주는 금융계좌추적 결과, 2009. 9. ~ 2012. 9.까지 위 계좌에서 신용카드 결제된 3,187만 원 중 2,183만 원이 피의자의 주장대로 전문가 회합, 국제회의 참석 부대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용카드( ) 사용 내역의 각 기재가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고,

- 여기에, 피의자는 오랜 시간의 경과로 증빙자료는 제출할 수 없지만 현금 인출 분 중 상당액도 특정업무경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피의자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빙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 한편, 경리담당 사무관 김\*영은 피의자에게 특정업무경비 관련 지침을 요약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비서관 명의로 제출된 집행내역확인서상 원래 용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용도 위반으로 지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 피의자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박\*홍도 유흥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외에 사용제한이나 증빙자료 제출에 관하여 설명이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자신이 피의자에게 설명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특정업무경비는 2005년까지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요구되지 않는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 운용되어 왔고, 축?조의금 사용제한은 2008년 이후에 추가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도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라고 예시적이고 포괄적으로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특정업무경비의 용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한다.

○ 결국,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에 대한 2차에 걸친 소환 조사, 관련 참고인들 조사, 은행 거래 내역 조회, 자기앞수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추적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변명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